
문서번호 : 15-08-긴조번호단-01
수 신 :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제 목 :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_8. 24.(월) 10:30, 헌법재판소 정문 앞
전송일자 : 2015. 8. 21.(금)
전송매수 : 총 3매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여는 말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질의응답